

## 신 · 구조문 대비표

=====

【별표】 2. 각종 인 · 허가 신고사항(46종 ⇒ 45종)

현 행			개 정 안		
종 목	단 위	수 수 료	종 목	단 위	수 수 료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2) 공연장 등록신청 (3)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1건	50,000원  25,000원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2) 공연장 등록신청 (3)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1건	50,000원  25,000원
나. 신고 · 신청에 관한 사항 (7) 한국영화 연간 의무 상영일수 감경신청	1건	2,000원	<삭 제>	<삭제>	<삭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 심 사 보 고 서

2003. 2. 24.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2월 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3년 2월 18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94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3년 2월 20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 가. 제안이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및 부칙 제9조에 의거 2003. 6. 30.까지 결정하여야 하는 법정사업으로 지역의 입지특성과 주택의 유형, 개발밀도를 반영하여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하여 양호한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확보, 토지 이용의 효율화 증진 및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일반주거지역 변경(세분)결정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증감	
계	6,869,455	6,869,455	0	100.0%
(세분)결정 전	6,745,110	0	감 6,745,110	0.0%
제1종	54,145	448,057	증 393,912	6.5%
제2종	7층 이하	50,875	증 3,277,423	48.4%
	12층 이하	0	증 1,089,202	15.9%
제3종	19,325	2,003,898	증 1,984,573	29.2%

○ 일반주거지역 종별 건축규모

구분	건폐율(%)		용적률(%)		주거형태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제1종	60	60	300	150	저층(4층 이하) 주택
제2종				200	중층(7층 이하) 주택
					중층(12층 이하) 주택
제3종		50		250	중·고층 주택

3. 심사결과 : 의견 없음

영등포구문화재(延齡君神道碑·肅宗王子碑)반환요청에대한건의문(안)

의안 번호	38
----------	----

발의년월일 : 2003. 2. 21.  
발 의 자 : 고현순 의원 외 5인

1. 주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유일한 문화재로 볼 수 있는 延齡君神道碑(肅宗王子碑)가 당초 소재지인 영등포구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이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으로부터 반환 받아 소중한 문화재로서 관리코자 함.

2. 제안이유

- 현재 육군사관학교 박물관 야외에 보관되어 있는 延齡君神道碑(肅宗王子碑)는 원래 영등포구 신길7동 대방초등학교(신길동 1444번지)의 교정 앞 묘역과 함께 있었던 문화재였으나, 1940년 경성지구 구획정리계획에 따라 묘역은 예산군 덕산면으로 이장하고 신도비만 남게 되었으며,
- 개인 소유가 불가한 이 神道碑마저 어떻게 개인 소유(배성관-골동품상)가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1967년 8월 3일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에 기증되어 현재 보관되고 있습니다.
- 본 문화재는 원래의 위치에서 보존되고 유지될 때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더구나 우리 영등포구가 한강 이남지역의 중심도시임에도 지정문화재가 1점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 우리 구에서의 유일한 문화재가 될 언령군신도비(延齡君神道碑)를 원래 있던 장소로 이전 복원하여 보존해야 함이 타당하기에 다음과 같이 관련기관에 건의코자 함.